

특별장학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함)내에 설치된 특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립) 본 대학교에 설치된 특별장학회명과 장학회별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영암장학회

본교 설립자이며 초대교장인 영암 김응조목사의 신학사상과 보수신앙을 이어나갈 인재를 양성하여 영암의 본교 설립이념을 기리기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 홍대실장학회

학교법인 성결교신학원 제4대 이사장이시며, 본교 서울교사를 세우고 현 안양교사 부지 기증자인 홍대실권사를 기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수장학회

4. 일중장학회

5. 백강장학회

6. 기타장학회(또는 장학금 기탁자)

제3조 (운영) 각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대학교 또는 각 장학회에 기증된 장학기금 및 그 이자를 기금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설립자(기탁자)의 특별한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제2조에 명기되기 전에 조성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제4조 (장학대상) 본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각 장학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장학생 선발과 지급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학회 특성 상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장학기금 운영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학회 설립자(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집행하도록 한다.

1. 위원은 4인으로 하며, 설립자측 위원 2인, 학교측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설립자측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은 각 측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특별장학회 규정(7-2-2)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자 측 위원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간사 1인을 두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이중수혜)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본 대학교(학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중수혜금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선발인원) 장학금액 및 수혜인원은 매학기 장학회별 예산에 따라 소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회의 요청에 의해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제5조, 제7조)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